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이언주 · 허성무 · 홍기원
안도걸 · 안호영 · 김우영
문대림 · 김한규 · 이원택
오세희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equiv_{\circ}).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부터 제91조의29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6제1항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6제3항제1호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6(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

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 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 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

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3억 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일 것

3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9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③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경우: 200만원

④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2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

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3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7(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제91조의26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국내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별 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9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3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같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9(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당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
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
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
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
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
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
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
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
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
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
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기
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1. ---

--- 제91조의25부터 제91조의29까지

--- 청년미래적금,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

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신 설>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6제3항제1호를--

1. · 2.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6(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

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
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6
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
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
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할 것

가.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3억원(제91조
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제91

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과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 금액일 것

3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9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③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균로소득만 있거나 균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
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
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
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
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
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④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
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국
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2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
다.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
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
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
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
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
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
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
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
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종료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3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91조의 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국내투자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
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의 가입 · 연장절차, 가입
대상의 확인 · 관리, 이자소득등
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91조의27(국내투자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액공
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
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투
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제91조의26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야 한다.

<신 설>

제91조의28(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국내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별 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900만원 + (3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300만원+(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화정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 9에서 같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9(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9년 12월 31 일까지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당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

하는 배당소득으로 한정한다)
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
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
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
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원
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을 적용
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
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
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
항을 적용받는 국내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거
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
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
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